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5호
- 나. 제 출 자 : 이경옥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7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2조부터 제4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다.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(안 제8조부터 제13조)
- 라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11. 17. ~ 11. 23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2조부터 제4조)
-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(안 제8조부터 제13조)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)

다. 검토의견

-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의료·돌봄·안전·운송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국민의 안전과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본 제정안은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적 지지와 지원은 타당하다 보며 법령의 범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3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